

#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0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2.

발의자 : 권성동 · 정갑윤 · 정성호  
전희경 · 경대수 · 김성태  
윤상직 · 여상규 · 이종명  
신상진 · 오신환 · 김진태  
박범계 · 이춘석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

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.

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을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,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회생법원의 신설 등(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6장 신설)

- 1)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, 고등법원, 특허법원, 지방법원, 가정법원, 행정법원 6종이었으나,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7종으로 함.
- 2) 회생법원에 관한 장을 새로 마련하여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함.

나. 회생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함(안 제10조제1항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1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종”을 “7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7. 회생법원

제3조제3항 중 “행정법원”을 “행정법원 ·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 ·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 ·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”을 “지방법원 · 가정법원 ·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”을 “지방법원 · 가정법원 ·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 ·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가정법원 및 행정법원”을 “가정법원 · 행정법원 및 회

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가정법원 사무국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”을 “가정법원 사무국장, 행정법원 사무국장, 회생법원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호 중 “가정법원 합의부”를 “가정법원 합의부 · 회생법원 합의부”로 한다.

제3편에 제6장(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6장 회생법원

제40조의5(회생법원장)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.

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

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0조의6(부)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.

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0조의7(합의부의 심판권)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
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회생법원합의부

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2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3. 회생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·기피사건 및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
4.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
② 회생법원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행정법원장”을 “행정법원장, 회생법원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 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. 다만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~ ③ (생 략)</p>	<p>④ <u>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</u>, 가정지원 및 시·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.</p>	<p>⑤ <u>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.</u></p>	<p>제9조의2(판사회의) ①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<u>가정법원 및 행정법원</u>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.</p>	<p>② (생 략)</p>	<p>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 ①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<u>가정법원 및 행정법원</u>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을 둘 수 있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④ <u>지방법원·가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</u>----- -----.</p>	<p>⑤ <u>지방법원·가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9조의2(판사회의) ① ----- -----<u>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) ① ----- ---<u>가정법원·행정법원 및 회생법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



심 판결·심판·결정·명령에 대  
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

2·3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2·3 (현행과 같음)

제6장 회생법원

제40조의5(회생법원장) ① 회생법

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.

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  
다.

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  
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공  
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  
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
을 준용한다.

제40조의6(부) ① 회생법원에 부  
를 둔다.

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  
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  
용한다.

제40조의7(합의부의 심판권) ①  
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 
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 
다.

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 
한 법률」에 의하여 회생법원  
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	<p><u>2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</u></p> <p><u>3. 회생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· 기피사건 및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</u></p> <p><u>4.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</u></p> <p><u>② 회생법원합의부는 회생법원 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 2심으로 심판한다.</u></p>
<p>제44조(보직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법연수원장, 고등법원장, 특허법원장, 법원행정처차장, 지방법원장, 가정법원장, <u>행정 법원장</u>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 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4조(보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행정</u> <u>법원장, 회생법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